

# 세종 전문과학기술업 빈일자리 채용 지원사업 공고

세종상공회의소에서는 세종지역 전문과학기술산업 관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종 전문과학기술업 빈일자리 채용 지원사업」을 통한 세종지역 전문과학기술업 관련 취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 04.

세종상공회의소 회장

## 1 사업개요

- 사업명 : 세종 전문과학기술업 빈일자리 채용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03. 01 ~ 2024. 12. 31
- 지원대상 : 대상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지원인원 : 70명
- 지원내용 : 전문과학기술업 업종에 취업한 구직자에 대한 장려금

구분	내용								
지원수준	■ 총지원금 300만원(근속기간에 따른 지원금 지급)								
	<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지원금액</th></tr></thead><tbody><tr><td>1회차(3개월 근속)</td><td>100만원</td></tr><tr><td>2회차(6개월 근속)</td><td>100만원</td></tr><tr><td>3회차(12개월 근속)</td><td>100만원</td></tr></tbody></table>	구분	지원금액	1회차(3개월 근속)	100만원	2회차(6개월 근속)	100만원	3회차(12개월 근속)	100만원
	구분	지원금액							
	1회차(3개월 근속)	100만원							
2회차(6개월 근속)	100만원								
3회차(12개월 근속)	100만원								
■ 지원기간 기산일:지원 대상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전환)일로부터 기산									
※ 지원금은 근속기간 3/6/12개월에 신청에 따라 지급 ※ 자격요건에 미충족(지원제외)되는 경우 일할계산 없음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 유형별 상세 요건 지침을 참고, 미충족시 참여가 불가함.

## 2 신청 및 접수

###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구 분	내 용
① 기업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특별자치시 내 사업장이 있는 전문과학기술업* 기업으로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첨1) 전문과학기술업 해당기업 또는 전문과학기술업 관련성이 확인된 기업</li> <li>** 별첨2) 우선지원 대상기업</li> </ul> </li> <li>■ <b>고용보험 업종코드 기준(산업코드 70~7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산재보험 토탈서비스&gt;사업장 총괄카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혹은 정규직 채용(전환)일 기준 피보험자수 5인이상(증빙가능 서류 지참 시 인정)</li> </ul> </li> </ul>
② 근로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03.01~24.08.31' 중에 대상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취업하였거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만 35세 이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li> <li>■ 근로조건: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li> <li>■ 근속기간:대상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변경이 없어야 함</li> <li>* 정규직이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li> <li>* 근로계약서 상 채용일과 고용보험상 취득(고용일)이 동일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 인정함</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고용보험내역과 근로계약서 비교</b></p> <p>√ 신청자는 고용보험 상의 취득일과 근로계약서 상의 정규직 채용일이 같은 날짜인지 확인 후 사업 신청</p> <p>* 정규직 채용되기 전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되어 고용보험 내역상 가입일과 근로 계약서상 채용일이 다른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정규직 근로계약서 각 1부씩 제출하여 정규직 채용일자를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함</p> <p>√ 고용보험 내역과 근로계약서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근로 복지공단)을 통해 근로계약서와 같은 경우에만 취업요건 충족한 것으로 봄</p> </div>

※ 유형별 상세 요건 지침을 참고, 미충족시 참여가 불가함.

- 접수기간 : ~ 2024. 12. 13.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6.15~8.31 입사자(전환자)도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신청(접수) 방법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신청서 제출

\* 세종상공회의소 공지사항 확인(홈페이지: <https://sejongcci.korcham.net>)

□ 제출서류(붙임파일 참조)

No.	제출서류	비 고
1	「세종 빈일자리 채용 지원금」 참여 신청서	- 해당 회사 서식 확인 후 신청서 작성
2	「세종 빈일자리 채용 지원금」 참여자 확인서	- 지원 제외 내용 확인 후 서명 필수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	사업장 총괄카드	
5	근로계약서 1부	
6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이체내역 1부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 해당 근속기간(3/6/12) 급여 이체내역
7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 1부	
8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전체이력 발급

※ 산업분류코드 확인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사업자명의인증서 로그인  
→ 정보조회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 고용보험 업종 코드 확인(70~73만 가능)

### 3 추진절차

단계	내용(장려금)
참여신청 (1차 지원금)	· (참여 희망자) 참여신청서(1차 지원금 신청서) 및 참여자 확인서 제출
↓	
적격 심사 및 지원금 지급	· (세종상공회의소) 참여자 적격심사 후 적격여부 통보 및 지원금 지급
↓	
2차, 3차 지원금 신청	· (참여자) 2차, 3차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요건검토 및 지원금 지급	· (세종상공회의소) 요건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4 지원금 신청 및 적격심사

### □ 지원금 신청 및 적격심사

구 분	내 용
신청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는 3·6·12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채용일 기준 3개월 근속의 다음날부터 3개월까지 사업참여 및 지원금 신청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24년 12월분에 대한 지원금은 수행기관의 안내에 따라 '24년 12월 중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부지급 될 수 있음</li> <li>※ 지원금 신청 기한이 도과한 경우 수행기관은 참여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회차부터 지원을 중단(지원금 부지급) 할 수 있음</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b>사업참여 및 지원금 신청기간(예시)</b></p> <p>정규직 입사일 또는 전환일이 2024년 3월 1일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월 근속기간 : '24년 3월 1일 ~ '24년 5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참여 및 1차 지원금 신청 : 2024년 6월 1일 ~ 8월 31일</li> </ul> </li> <li>* 6개월 근속기간 : '24년 6월 1일 ~ '24년 8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지원금 신청 : 2024년 9월 1일 ~ 11월 30일</li> </ul> </li> <li>* 12개월 근속기간 : '24년 9월 1일 ~ '25년 2월 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차 지원금 신청 : 2025년 3월 1일 ~ 5월 31일</li> </ul> </li> </ul> </div>
적격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기관은 참여자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지원금 대상자의 재직 및 근속 여부를 확인한 후 적격여부를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서를 발송</li> <li>○ <b>(적격시)</b>:지원금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 지급 후 참여자가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참여 또는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수행기관의 반환명령에 응하여야 하며, 징수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플러스 사업참여를 제한함</li> <li>또한,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지급받은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율(최대 500%)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음</li> </ul> </li> <li>○ <b>(부적격시)</b>:지원금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지급 결정을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원을 중단(지원금 부지급)을 할 수 있으며, 참여자가 추가 기간 요구시 1회(10영업일 이내)에 한해 연장이 가능함</li> </ul> </li> </ul>

□ **적용규정** : 본 사업 관련 사항은 ‘세종 빈일자리 채용지원금 세부 운영 지침’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

□ **지원제외 사항**

#### 지원 제외 요건

● 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채용 시점뿐만 아니라, 장려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도 근로계약 기간이 제한 없는 자로 채용된 경우

다른 사업장에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채용일 현재 타 사업장의 고용보험 내역에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없는 근로자(상용 근로자)로 가입이 확인되는 자

\* 단순히 일용 근로내역이나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지원배제되지 않음

②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의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

③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에, 3개월(월 기준) 이내 동일 기억 등 정규직으로 취업한(재취업하려는) 경우

\* 사업장 기준으로 사업주가 동일하거나 법인 대표가 동일한 경우

\* 사업장 기준으로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가 변경되었더라도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장소와 업무 등)한 경우

④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⑥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참고사항** : 세종 일자리 채용 지원금은 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허용

※ 다른 사업에서 중복을 불허하여 중복 지원금 반환 필요시에는 중복을 불허하는 해당 사업의 부당이익 반환 절차에 따름

(예)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을 받는 경우, 세종 일자리 채용 지원금은 지원 가능하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침에 따라 유사 사업 중복 기간 취업 성공수당 부지급 원칙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이 환수되거나 부지급 될 수 있음

## 6 문의 및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 PDF 파일 합본으로 제출 必

□ 문의처 : 세종상공회의소 회원사업팀

담당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성수경 주 임	070-4163-2728	sejongcci@naver.com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003, 5층 (소담동, 펠리체타워Ⅲ)

※접수 후 필히 유선으로 접수완료 확인(유선확인 하지 않은 경우, 접수 누락시 신청인 책임)

**별첨 1**

**전문과학기술업 해당기업**

구분	산업코드	업종명	구분	산업코드	업종명
연구개발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	71600	기타 전문 서비스업
	70112	농림수산업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2111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2112	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0129	기타공학연구개발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72911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
	70201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2921	측량업
전문서비스	71101	변호사업	전문서비스	72922	제도업
	71102	변리사업		72923	지질 조사 및 탐사업
	71103	법무사업		72924	지도 제작업
	7110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73100	수의업
	71201	공인회계사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1202	세무사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1209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1310	광고 대행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3301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71392	광고 매체 판매업		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3303	사진 처리업
	71399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73901	매니저업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		73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71511	제조업 회사 본부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1519	기타 산업 회사본부		73904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1531	경영 컨설팅업		73909	그외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1532	공공관계 서비스업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 및 창고업 5. 정보통신업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B F H J N	3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G I K R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사업장

사무대행기관

의료기관

개인

[사업장] 109-

민원접수/신고

정보조회

전자통지

증명원 신청/발급

업무상질병판정

심사청구

보수정보 간편신고

정보조회

보험가입정보 조회

보험료정보 조회

요양/보상정보 조회

일자리지원금 조회

### 정보조회

☞ 정보조회

메뉴숨김

화면인쇄

🚫 화면인쇄 안내

#### ●● 정보조회소개

-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를 이용하여 각종 보험정보를 조회출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정보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정보 조회

- (코로나-19 방역 피해 소상공인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조회)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20101)**
- 사업개시사업장현황조회(20102)
- 하수급승인사업장현황조회(20104)
- 플랫폼 이용사업 개시신고 처리 결과 안내
- 플랫폼 이용사업 개시현황 조회
- 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현황조회(20103)
-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정보조회
- 사업장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입·이직 신고내역조회(20106)
- 사업장별 학생연구자 현황내역조회
- 산재보험해외파견자적용현황조회(20107)

#### 보험료정보 조회

- 보험료미납내역 조회(20201)
- 보험료신고서 조회(20202)
- 노무제공자 보험료신고현황(20203)
- 보험료과납내역 조회(20204)
- 충당반환내역조회(20205)
- 사업장요율 조회(20206)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년도/개인별 보험료(20207)
- 고객용 징수금카드조회(20208)
-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20209)
-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20210)
- 사회보험료지원대상근로자내역조회(20211)

(코로나-19 방역 피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조회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20101)

사업개시사업장현황조회(20102)

하수급승인사업장현황조회(20104)

플랫폼 이용사업 개시신고 처리 결과  
안내

플랫폼 이용사업 개시현황 조회

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현황조회  
(20103)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정보조회

사업장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입·  
이직 신고내역조회(20106)

사업장별 학생연구자 현황내역조회

산재보험해외파견자적용현황조회  
(20107)

미승인하수급승인사업장현황조회  
(20108)

미승인하수급일용근로자고용정보조회  
(20109)

보험료정보 조회

요양/보상정보 조회

일자리지원금 조회

· 관리번호 109-

조회

#### ● 사업개요

대표자명		공동대표 조회	주민등록번호	
가족종사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주와의관계			전화번호	
사업장명	세종상공회의소		전화번호	044-863-3080
E-mail	sejong@korcham.net		관리지사	대전서부지사
법인등록번호	16		사업자등록번호	109-
사업장소재지	(301-50)세종 한누리대로 2003 37-7 펠리체타워3 5층 504호			
우편물소재지	(301-50)세종 한누리대로 2003 37-7 펠리체타워3 5층 504호			
적용 담당자			상담 담당자	
사회보험료 지원여부				

적용					
산재	사업장상태	정상	성립일자		소멸일자
	사업구분	계속	하수급여부		미가입제해여부
	업종	사업서비스업 (90104)			상시근로자수
고용	사업장상태	정상	성립일자		소멸일자
	사업구분	계속	하수급여부		대규모기업
	업종	94110(산업 단체)			상시근로자수

대표자변경 | 가족종사자변경 | 사업장변경 | 업종변경 | 관리번호변경 | 주된사업장변경 | 사업개시 | 부과고지사업장 | 석면사업장변경